

소규모펀드 수시공시 (2013.11.01)

자본시장법 제 89 조, 동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 제 4 호 및 제 5 호 등에 따라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- 아 래 -

1. 공시사유 발생일: 2013 년 10 월 31 일

2. 공시사항:

가: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입니다.

나.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대상펀드: 아래 펀드

(단위:좌)

| 펀드명 | 협회표준코드 | 원본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AB 퓨처 트렌드 증권투자신탁(주식 - 재간접형) 종류A | KR5370A15273 | 1,100,294,253 |
| AB 퓨처 트렌드 증권투자신탁(주식 - 재간접형) 종류 C3 | KR5370A15315 | 50,017,581 |
| AB 퓨처 트렌드 증권투자신탁(주식 - 재간접형) 종류 C-e | KR5370A15331 | 9,508,261 |

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(주)

대표이사 이석재